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2.4.20.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나.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다.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8조의2)
- 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15.~10.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2022.4.20.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운영체계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운영대행사’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임. 이는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임.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권 관련 업무 수탁의 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

- **안 제4조의2**는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구 구금고에 설치·운영 하도록 함.

다만, 각 자치구가 자금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선불충전금을 포함한 상품권 운영자금을 시금고(신한은행)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신탁체결 주체는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임.

- **안 제8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여 등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의2**는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자금 관리 등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신 · 구조문대비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신 설>	<p>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p>	<p>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p> <p>3.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 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3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다.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9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22.~10.12./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안 제4조는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면서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 근무환경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필수업무의 이러한 취약한 여건, 고용불안 등은 구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등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다.삭제 <2013. 8. 6.><이하 생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나.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2.9.15.~10.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 (2027.12.31.까지)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1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하도록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조례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